

● 제33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61)
검 토 보 고 서**

2025. 4.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661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 3. 31.
다. 회 부 일 : 2025. 4. 2.

2. 제안이유

- 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사회복지시설)임
- 나. 서울형 키즈카페(시립 서울식물원점)은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기 관 명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2층
- 규 모 : 2층, 222m² (67평)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 아동 17명(회당) / 종사자 4명
- 조성기간¹⁾ : 2025.7.~2025.11. (예정)
- 소요예산(설치비)²⁾ : 755백만원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 관리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양육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 5년(2025. 9. ~ 2030. 9.)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5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5.3.7.)
- '25년 소요예산(안) : 185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담당부서(아이돌봄담당관) 담당자 통해 별도 확인

2) 아이돌봄담당관-1857, 2025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2025.2.13., p.6.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운영 사무를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예산조치 : 2025년 추경 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의 개요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식물원점’은 기존 서울식물원 문화센터 2층에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2025년 11월 개소 및 운영 예정³⁾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7호⁴⁾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놀이,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는 아동전용시설로 사회복지시설임⁵⁾.
- 본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사무에 대해 신규로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⁶⁾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

3) 아이돌봄담당관-1857, 2025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2025.2.13.

4)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운영과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시설물 유지와 재산관리 등임.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⁷⁾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53조⁸⁾ 및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⁹⁾에 따라 시장은 아동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고 하는 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제2항¹⁰⁾에서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키즈카페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

7)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8)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기구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10)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25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서울식물원이라는 장소 특성을 살리는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별로 설치 주체(여성가족실,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등)가 다양해 향후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통합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향후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임.
- 또한 키즈카페 조성될 장소는 현재는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어 건물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설치·운영되기 위해서는 건물용도를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필요해 보여 건물 용도변경을 포함해 세부공정 단계에 대한 관리부서의 밀착관리를 통해 시설 개소예정애 차질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임.

<서울식물원 내 키즈카페 조성 대상지 현황>

- 대상지 : 서울식물원 문화센터 (2층 식물도서관)

시설명	위치	연면적(㎡)	주용도	준공일
식물문화센터	강서구 마곡동로 161, 2층	222㎡	문화 및 집회시설	'18.9.17.

- 시립 서울형키즈카페(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변경(노유자시설) 추진 필요

구 분	당 초	변경후
세부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 시설
세부시설	식물도서관	서울형 키즈카페

3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에 관한 사무를 신규로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
-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아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향후 집행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설치 장소별 특성을 살리는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시설 특성을 고려한 운영전략과 전체적인 통합 관리 체계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서울식물원점 문화센터 2층의 도서관을 키즈카페로

조성함에 있어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공사 등 세부공정단계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 후 개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문 의 처
(02-2180-8148)